

#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5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6. 3. 4.  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을 발굴하도록 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대상을 모든 입주자로 확대함(안 제9조제3항)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9조제3항 중 “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, 장애인, 아동”을 “입주  
자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보건복지서비스 강화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<u>치매노인</u>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.</p>	<p>제9조(보건복지서비스 강화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독거노인 세대와 <u>치매노인, 장애인, 아동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제9조(보건복지서비스 강화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입주자</u>----- -----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,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,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
7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
9.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을”을 “공동사용 전기요금·수도요금·공공하수도사용료·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”을 “입주자”로 한다.

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중복지원 제한)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7조(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<u>다음 사항을</u>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</u></p> <p><u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u></p> <p><u>7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</u></p> <p><u>8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</p> <p><u>9. 주거복지 전문인력 및 전문상담원 양성 및 배치</u></p> <p><u>10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공동사용 전기요금 · 수도요금 · 공공하수도사용료 · 물</u></p>

1. 공동사용 전기요금·수도요금  
· 공공하수도사용료·물이용 부  
담금 등 공동관리비

② (생략)

제9조(보건복지서비스 강화) ①·②  
(생략)

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  
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  
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.

<신설>

제16조·제17조 (생략)

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--  
-

<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보건복지서비스 강화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입주자-----  
-----.

제16조(중복지원 제한) 시장은 입주  
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 
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 
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
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  
할 수 있다.

제17조·제18조 (현행 제16조 및 제  
17조와 같음)